

201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('10.12.28) 결과보고서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10-12호	복 무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관리자(소속부서장) 직제 조정(안 제3조) - 과장급 → 실장·팀장·과장급 ○ 통상근무시간 조정(안 제12조) - 1일 근무시간 : 8시간 → 8시간(휴게시간 제외) -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: 7시간 → 7시간 30분 ○ 출근 근무상황부 서식 개정 및 관리체계 변경(안 제17조) ○ 조퇴 및 외출 시의 사전허가 절차 변경(안 제19조) - 소속부서장 사전허가 →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후 총무팀장 의 사전허가(조퇴원, 외출부) ○ 병가 인정일수(3일 이상으로 의사의 진단서 제출) 신설(안 제 27조)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전라북도 지사 “승인” ('10.12.31)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10-13호	인 사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근속승진 신설(안 제29조의1) - 대상 및 요건 ▪ 매년 전체직원수의 2%에 해당하는 수의 직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▪ 해당직급 승진소요년수 3배수 이상 재직하였으나 입사 후 승진된 적이 없는 7급, 8급, 9급 직원 - 근속승진 제한 : 1회에 한함. - 정원관리 ▪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보고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소된 것으로 봄. ▪ 근속승진자가 상위직급승진, 퇴직 등으로 현원이 소멸되면 그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고 그 바로 하위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봄. ○ 직위해제에 대기명령 및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신설(안 제40조) - 대기명령 :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함. -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▪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미료의결	“미료”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10-14호	직 원 의 근 무 평 정 과 절 차 에 관 한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감점평정 신설(안 제22조의1) - 대상 : 4급 이하 직원 - 감점기준 ▪ 중징계 1건당 3.0점 ▪ 경징계 1건당 2.0점 ▪ 직위해제 1건당 1.0점 ▪ 경고(훈계) 1건당 0.5점 ▪ 주의 1건당 0.3점 ▪ 민원 불친절로 인한 경고(훈계, 주의) 1건당 1.0점 ※ 동일사안으로 이중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점수를 감점으로 평정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전라북도 지사 “승인” ("10.12.31)
제2010-15호	회 계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전국 지방의료원 공통 전산서식으로 전표 신설(안 제36조, 안 제95조, 안 “별지 1호 서식”, 안 “별지 2호 서식”) - 출금전표,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신설 ○ 이월예산 「지방재정법」 준용 신설(안 제57조) ○ 「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하여 이월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(안 제70조) - 이월요구서 제출 : 소관부서장 →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▪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: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▪ 사고이월 :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- 이월예산 확정 ▪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: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이사회 의결 ▪ 사고이월 :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원장 결재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전라북도 지사 “승인” ("10.12.31)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10-16호	환 자 급 식 관 리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「식품위생법」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변경(안 제12조) - 준수사항 ▪ 환자식 48시간 보존 → 조리·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전라북도 지사 “승인” ('10.12.31)
제2010-17호	여 비 규 정 전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 “별표 1”을 준용하여 여비 지급구분 조정(안 제3조) - 임원 → 제1호 라목 적용(시장·군수 및 자치구청장 수준) - 직원 → 제2호 나목 적용(공무원 최하등급 수준) ○ 운임, 숙박비 등 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준용(안 제4조 ~ 제5조) 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(안 제5조) - 임원이 공무원인 경우 교통비·식비·숙박비 등 여비 지급 시 「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」에 따라 실비변상 지급 ○ 병원사정에 따라 여비 지급액·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 원장의 여비지급 특례 신설(안 제6조) ※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'08.06월부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공무원 대비 70~77% 정도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. ▪ 서울 : 33천원(공무원 86천원), 전주 : 28천원(공무원 39천원)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전라북도 지사 “승인” ('10.12.31)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09-21호	<2009년 도 미 료 안 건> 여 비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준용하여 조정(안 제9조) - 제1호~제5호 → 제1호~제2호 ○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준용하여 조정(안 제10조) - 1급·이사·감사, 2~4급, 5급 이하 → 제1호~제2호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폐기의결	“폐기” ("10.12.28)
제2010-18호	진 료 비 본 인 부 담 미 수 금 결 손 처 분 승 인 안	< 상정내용 > ○ 결손처분 건수 : 73건 ○ 결손처분 금액 : 금9,331,570원 ※ 미수금 11,973,500원 중 2,641,930원 회수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“결손처분” ("10.12.29)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10-19호	2010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세입·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	< 상정내용 > ○ 추가경정 예산(안) 규모 (단위 : 천원) 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과 목</th> <th>추경예산(안)</th> <th>기정예산</th> <th>증감액</th> <th>증감율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세입</td> <td>총 수 익</td> <td>42,047,780</td> <td>42,847,155</td> <td>△ 799,375</td> <td>△ 1.9%</td> </tr> <tr> <td>병 원 사 업 수 익</td> <td>30,628,758</td> <td>31,468,260</td> <td>△ 839,502</td> <td>△ 2.7%</td> </tr> <tr> <td>자 본 적 수 입</td> <td>1,896,578</td> <td>1,856,451</td> <td>40,127</td> <td>2.2%</td> </tr> <tr> <td>이 월 금 수 입</td> <td>9,522,444</td> <td>9,522,444</td> <td>0</td> <td>0.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세출</td> <td>총 비 용</td> <td>42,047,780</td> <td>42,847,155</td> <td>△ 799,375</td> <td>△ 1.9%</td> </tr> <tr> <td>병 원 사 업 비 용</td> <td>27,235,792</td> <td>27,948,249</td> <td>△ 712,457</td> <td>△ 2.5%</td> </tr> <tr> <td>자 본 적 지 출</td> <td>7,670,452</td> <td>7,798,087</td> <td>△ 127,635</td> <td>△ 1.6%</td> </tr> <tr> <td>과년도미지급금</td> <td>7,141,536</td> <td>7,100,819</td> <td>40,717</td> <td>0.6%</td> </tr> </table> < 의결사항 > ○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구분	과 목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	세입	총 수 익	42,047,780	42,847,155	△ 799,375	△ 1.9%	병 원 사 업 수 익	30,628,758	31,468,260	△ 839,502	△ 2.7%	자 본 적 수 입	1,896,578	1,856,451	40,127	2.2%	이 월 금 수 입	9,522,444	9,522,444	0	0.0%	세출	총 비 용	42,047,780	42,847,155	△ 799,375	△ 1.9%	병 원 사 업 비 용	27,235,792	27,948,249	△ 712,457	△ 2.5%	자 본 적 지 출	7,670,452	7,798,087	△ 127,635	△ 1.6%	과년도미지급금	7,141,536	7,100,819	40,717	0.6%	전라북도 지사 “보고” ("10.12.29)
구분	과 목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입	총 수 익	42,047,780	42,847,155	△ 799,375	△ 1.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병 원 사 업 수 익	30,628,758	31,468,260	△ 839,502	△ 2.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 본 적 수 입	1,896,578	1,856,451	40,127	2.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 월 금 수 입	9,522,444	9,522,444	0	0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출	총 비 용	42,047,780	42,847,155	△ 799,375	△ 1.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병 원 사 업 비 용	27,235,792	27,948,249	△ 712,457	△ 2.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 본 적 지 출	7,670,452	7,798,087	△ 127,635	△ 1.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과년도미지급금	7,141,536	7,100,819	40,717	0.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10-20호	2011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세입·세출 예산안	< 상정내용 > ○ 예산 규모 : 35,801,021천원(전년대비 △6,246,759천원 / △14.9%) (단위 : 천원) <table> <tr> <th colspan="2">세 입</th> <th colspan="2">세 출</th> </tr> <tr> <th>과 목</th> <th>금 액</th> <th>과 목</th> <th>금 액</th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35,801,021</td> <td>합 계</td> <td>35,801,021</td> </tr> <tr> <td>병원사업수익</td> <td>31,832,463</td> <td>병원사업비용</td> <td>27,716,320</td> </tr> <tr> <td>자 본 적 수 입</td> <td>415,512</td> <td>자 본 적 지 출</td> <td>988,979</td> </tr> <tr> <td>이 월 금 수 입</td> <td>3,553,046</td> <td>과년도미지급금</td> <td>7,095,722</td> </tr> </table> ○ 진료 계획 - 총 진료인원 : 293,608명(전년대비 증 18,484명 / 증 6.7%) ▪ 입 원 : 111,613명(전년대비 증 4,168명 / 증 3.9%) ▪ 외 래 : 181,995명(전년대비 증 14,316명 / 증 8.5%) ○ 병실가동 계획 : 87.4%(전년대비 증 3.4%) < 의결사항 > ○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	세 입		세 출		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	합 계	35,801,021	합 계	35,801,021	병원사업수익	31,832,463	병원사업비용	27,716,320	자 본 적 수 입	415,512	자 본 적 지 출	988,979	이 월 금 수 입	3,553,046	과년도미지급금	7,095,722	전라북도 지사 “보고” ("10.12.29)																								
세 입		세 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35,801,021	합 계	35,801,02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병원사업수익	31,832,463	병원사업비용	27,716,3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 본 적 수 입	415,512	자 본 적 지 출	988,9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월 금 수 입	3,553,046	과년도미지급금	7,095,72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의안 번호	제 목(건 명)	의 결 사 항	처리결과
제2010-21호	보 수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임금총액 지급표 조정(안 “별표 9”) - 임금총액 지급율 조정 : 5.0% 인상 ※ 2010년도 임금인상 적용시기를 중앙교섭 노사합의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▪ 2010년도 연간 예상동결액 : 490백만원 ▪ 2011년도 연간 예상인상액 : 502백만원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미료의결	“미료”
제2010-22호	전 공 의 보 수 규 정 일부개정규정 안	< 상정내용 > ○ 전공의 고정급여표 조정(안 “별표 1”) - 전공의 고정급여 조정 : 5.0% 인상 ※ 2011년도 연간 예상인상액 : 14백만원 < 의결사항 > ○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미료의결	“미료”